

6. 駐車場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530號 1995. 2. 18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 또는 전시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 : 8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80퍼센트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70퍼센트

제2조의2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

1.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복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위락시설

나. 판매시설

다. 숙박시설

라.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다)

2. 당해 시설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

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1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11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이상의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1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제14조제1호중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되 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증축분을 포함한다)에 설치대상제의 시설물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대

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한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유◇

날로 심하여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차장전용건축물에 연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근린생활시

설·근린공공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운동시설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고 그 면적도 연면적의 20퍼센트이내로 상향조정함(영 제1조의2).

나. 종전에는 기존의 시설물의 용도를 주차장설치기준이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시설물의 용도를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영 제6조).

다. 시설물의 인근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이하에서 주차대수 100대이하까지 상향조정하되, 시설물에 인접한 대지나 시설물과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부지가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규모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이하로 함(영 제7조). 〈법제처 제공〉

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